

- 그 타당성 등에 대한 시의회 차원에서의 계속적인 검토와 검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5. 토론요지 : 없음
- 6.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.
- 7. 수정안의 요지 :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골자(별첨)
- 8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(재적의원 14명 전원일치 의결)
- 9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- 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운영자가 사망한 때(배우자 승계시 제외)

제11조제1항제2호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2000년 1월 1일 이후에 교체 정비한 시설물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 가액의 70/1000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적용례)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거나 갱신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시의회"라 한다)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법 제95조제2항 및 제3항 등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득한 사항이나, 이미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업영역에서의 추가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시의회"라 한다)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법 제95조제2항 및 제3항 등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득한 사항이나, 이미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업영역에서의 추가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8조제3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